

의안번호	2215285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3.
추 계 번호	25E7044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유류 관련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조 제7항 (과세표준과 세율)	-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의 50%까지 확대 - 탄력세율: (현행) 기본세율 $\pm$ 30% 범위 (개정안) 기본세율 $\pm$ 50% 범위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조 제7항 (과세표준과 세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법률상 규정된 유류 관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의 50% 범위 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, 탄력세율 조정범위 확대에 따라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
- 구체적인 유종별 탄력세율 수준 및 적용기간 등은 정부가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
 - 참고로 「개별소비세법」 상 탄력세율 운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

[표 1] 유류 관련 개별소비세 세율 현황(2025년 12월 기준)

유종	기본세율(탄력세율)
등유	90원/L (63원/L)
중유	17원/L
프로판(수소제조용, 가정 및 상업용)	20원/kg (14원/kg)

유종	기본세율 (탄력세율)
부탄	252원/kg (247.5원/kg)
도시가스용 천연가스	60원/kg (42원/kg)
발전용 천연가스 (열병합 발전용, 수소제조용)	12원/kg (8.4원/kg)
부생연료유	90원/L (63원/L)
발전용 유연탄	46원/kg (39.1/kg)

- 정부의 탄력세율 운용 여부 등에 따라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, 현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